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6.24.)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목 차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21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 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안 제26조)
- 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제54조제2호)
- 라.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2항제3호)
-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5항)
-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3)
- 사.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 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안 별표 3 ~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3. 29. ~ 4.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5. 12. 15. 2016. 2. 11. 2016. 3. 22.)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

- 안 제26조의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서 허가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위입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
- 안 제50조 제2항(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53조 제2항 제3호, 제53조 제5항(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54조 제2호(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 기타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라 시설 입지가능 용도지역 확대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

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
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
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
을 말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
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
설만 해당한다)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
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
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
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
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2.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개정 2016.2.1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16.2.1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16.2.1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개정 2016.2.11.>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개정 2016.2.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개정 2016.2.1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16.2.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16.3.2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16.3.22.>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 2016.2.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개정 2016.2.1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개정 2016.2.1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요구이유

-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49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마을만들기 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무 교류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2조)

-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

나. 기능(안 제3조)

-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 5) 그 밖에 본 협의회를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 1)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

라. 임원(안 제5조)

-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마. 임원의 임기(안 제6조)

-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2) 협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아. 자문위원(안 제13조)

-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 2)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

자.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차. 실무협의회(안 제15조)

-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함

카. 사무국(안 제16조)

-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타. 경비부담(안 제17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파. 효력발생(안 부칙)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참고사항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사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추진목표

- 지방자치의 실현
- 지역사회의 혁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사업방향

-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 마을만들기 공동협력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 광역자치단체 연 5백만원 - 기초자치단체 연 2백만원

○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분야	세 부 추 진 사 업	비 고
제도개선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 추진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상시 2016 상반기 반기별 1회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전담부서 신설·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대	상시 상시 상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국제 컨퍼런스 개최 ▶마을만들기 연수프로그램 운영(국내/국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2016. 7월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공동협력	▶마을만들기 관련 정부·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공동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와 협력사업 추진	2016 상반기 2015. 9월 상시

3)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현황

○ 회원 현황: 53개 지방자치단체 / 광역 4, 기초 49

○ 자문위원회: 4개 광역자치단체

시 도 명	직 위	단체장명	시 도 명	직 위	단체장명
서울특별시	시 장	박원순	경 기 도	도지사	남경필
광주광역시	시 장	윤장현	강 원 도	도지사	최문순

○ 협 의 회: 49개 기초자치단체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1	경기도 (9)	광명시	양기대	25	서 울 특별시 (20)	강동구	이해식
2		군포시	김윤주	26		강북구	박겸수
3		김포시	유영록	27		강서구	노현송
4		부천시	김만수	28		관악구	유종필
5		수원시	염태영	29		광진구	김기동
6		시흥시	김윤식	30		구로구	이 성
7		안산시	제종길	31		금천구	차성수
8		안성시	황은성	32		노원구	김성환
9		오산시	곽상욱	33		도봉구	이동진
10	경상	거창군	양동인	34		동대문구	유덕열
11	남도	사천시	송도근	35		동작구	이창우
12	(3)	함안군	차정섭	36		마포구	박홍섭
13	광주	광산구	민형배	37		서대문구	문석진
14	광역시	남 구	최영호	38		성동구	정원오
15	(3)	서 구	임우진	39		성북구	김영배
16	인천	남 구	박우섭	40		양천구	김수영
17	광역시	부평구	홍미영	41		영등포구	조길형
	(2)						
18	전라	담양군	최형식	42		은평구	김우영
19	남도(2)	해남군	박철환	43		종로구	김영종
20		무주군	황정수	44	중 구	최창식	
21	전라	완주군	박성일	45	충청	논산시	황명선
22	북도	전주시	김승수	46	남도(2)	아산시	복기왕
23	(5)	정읍시	김생기	47	강원도	강릉시	최명희
24		진안군	이항로	48		정선군	전정환
				49	(3)	평창군	심재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주소
상임회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 / 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공동회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공동회장	최명희	강원도 강릉시 / 시장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부 회 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부 회 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 / 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부 회 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 / 시장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내동)
부 회 장	황정수	전라북도 무주군 / 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부 회 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15(송정동)
부 회 장	양동인	경상남도 거창군 / 군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자문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 / 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자문위원	윤장현	광주광역시 / 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자문위원	남경필	경기도 /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자문위원	최문순	강원도 / 도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회 원	박겸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13(수유동)
회 원	노현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회 원	유종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회 원	김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회 원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회 원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63길91(시흥동)
회 원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회 원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회 원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회 원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노량진동)
회 원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회 원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회 원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회 원	김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주소
회 원	조길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당산동3가)
회 원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회 원	김영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회 원	최창식	서울특별시 중 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회 원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회 원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 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회 원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 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회 원	양기대	경기도 광명시 / 시장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회 원	김윤주	경기도 군포시 / 시장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회 원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 / 시장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회 원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 / 시장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회 원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 / 시장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회 원	제종길	경기도 안산시 / 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회 원	황은성	경기도 안성시 / 시장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회 원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 시장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회 원	전정환	강원도 정선군 / 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회 원	심재국	강원도 평창군 / 군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회 원	복기왕	충청남도 아산시 / 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회 원	박성일	전라북도 완주군 / 군수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회 원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 / 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서노송동)
회 원	김생기	전라북도 정읍시 / 시장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회 원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 / 군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회 원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 / 군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회 원	박철환	전라남도 해남군 / 군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회 원	송도근	경상남도 사천시 / 시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회 원	차정섭	경상남도 함안군 / 군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5. 검토이견

-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정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49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무 교류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까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5조에서 101조까지 규정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직, 규약, 자료제출요구, 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 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 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 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 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 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